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667호) 공포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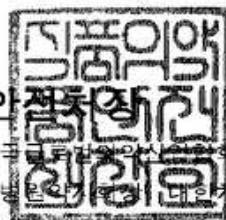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667호)이 2024.7.2. 자로 불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주요 개정내용

- 마약류관리법 위반(장소·시설 등 제공) 사실의 통지 대상 식품점객업소 종류 규정
-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대상 기관 규정
- 원료물질 복합제 농도기준 설정

- 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4. 7. 2. 자 관보, 우리 츠 대표 누리집([www.mfds.go.kr](http://www.mfds.go.kr)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667호) 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명인

수신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한국제약환경의약품협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방문의사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수의사회장, 한국동물약품협회장,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한국화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주무관 황재양 약무사무관 박미영 마약정책과장 정현철  
진결 2024. 7. 2.

협조자

시행 마약정책과-11232 (2024. 7. 2.)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 / [mfds.go.kr](http://mfds.go.kr)  
전화번호 043-719-2805 팩스번호 0502-604-7992 / 대국민 공개

힘내라 대한민국!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마 약 류 관 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 1. 의결주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식품접객업 영업소 운영자의 위반사항을 그 허가권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일정 농도 이하로 원료 물질을 함유하는 원료물질 복합제를 제조·거래하는 경우 거래 기록 작성·보존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48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 법률 제19889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 법률 제20214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이 위반사항을 통보해야 하는 식품 접객업의 범위를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홍주점영업으로 정하며, 거래 기록 작성·보존 의무가 면제되는 원료물질 최고농도를 30개의 1군 원료물질과 7개의 2군 원료물질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3. 주요토의과제

없음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4. 3. ~ 5.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① 법 제2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장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법무부장관
5. 국방부장관
6. 행정안전부장관
7. 보건복지부장관
8. 여성가족부장관
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0. 국무조정실장
11. 관세청장
12. 검찰총장

13. 병무청장

14. 경찰청장

15. 해양경찰청장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조의5제1항에 따라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대통령령 제3417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의7의 개정규정을 제2조의8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 법 제44조의2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 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고농도는 별표 8과 같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417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의8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하며, 제19조제1항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8]

원료물질, 최대거래량 및 최고농도(제2조제5항, 제6조, 제19조제1항 · 제3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1. 원료물질은 다음의 것과 그 염류로 한다

가. 1군

구분	품명	최대거래량	최고농도
1	에페드린(Ephedrine)	1킬로그램	10%
2	에르고메트린(Ergometrine)	10킬로그램	50%
3	에르고타민(Ergotamine)	20킬로그램	50%
4	리서직산(Lysergic acid)		50%
5	1-페닐-2-프로파논(1-phenyl-2-propanone)		
6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1킬로그램	10%
7	엔-아세틸안트라닐산 (N-acetyl-anthranilic acid)	40킬로그램	50%
8	이소사프롤(Isosafrole)		50%
9	3,4-메틸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 (3,4- Methyleneoxy-phenyl-2-propanone)	20킬로그램	50%
10	피페로날(Piperonal)		50%
11	사프롤(Safrole)		50%
12	노르에페드린(Norephedrine)		50%
13	무수초산(Acetic anhydride)	1,000 킬로그램 (920리터)	50%
14	아세톤(Acetone)	1,500 킬로그램 (1,893리터)	50%
15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	500킬로그램 (185리터)	15%
16	감마부티롤락톤(gamma-butyrolactone)		70%
17	1,4-부탄디올(1,4-Butanediol)		100%
18	디히드로리서직산메틸에스테르 (Dihydrolysergic acid methyl ester)		100%
19	페닐초산(Phenylacetic acid)	1킬로그램	40%

20	벤질 시아니드(Benzyl cyanide)	1킬로그램	20%
21	벤즈알 데 히드(Benzaldehyde)	4킬로그램	50%
22	메틸아민(Methylamine)	1킬로그램	20%
23	에틸아민(Ethylamine)	1킬로그램	20%
24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 (alpha-Phenylacetoacetonitrile, APAAN)		
25	엔-펜에틸-4-피페리돈 (N-Phenethyl-4-piperidone, NPP)		50%
26	4-아닐리노-엔-펜에틸피페리딘 (4-Anilino-N-phenethylpiperidine, ANPP)		50%
27	3,4-메틸렌디옥시페닐-2- 프로파논메틸글리시딕에시드 (3,4-methylenedioxophenyl-2-propanone methyl glycidic acid, 3,4-MDP-2-P methyl glycidic acid)		50%
28	3,4-메틸렌디옥시페닐-2- 프로파논메틸글리시딕에시드메틸에스테르 (3,4-methylenedioxophenyl-2-propanone methyl glycidic acid methyl ester, 3,4-MDP-2-P methyl glycidic acid methyl ester)		50%
29	알파-페닐아세토아세트아마이드 (alpha-Phenylacetoacetamide, APAA)		
30	메틸-알파-페닐-아세토아세테이트 (Methyl-alpha-phenyl-acetoacetate, MAPA)		

#### 나. 2군

구분	품명	최대거래량	최고농도
1	안트라닐산(Anthranilic acid)	30킬로그램	50%
2	에틸에테르(Ethyl ether)	1,400 킬로그램 (1,902리터)	90%
3	피페리딘(Piperidine)	500그램	90%
4	염산(염류 제외)(Hydrochloric acid)		30%
5	메틸에틸케톤 (Methyl ethyl Ketone, 2-Butanone)	1,460 킬로그램 (1,814리터)	90%

6	황산(염류 제외)(Sulphuric acid)		90%
7	톨루엔(Toluene)	1,600 킬로그램 (1,845리터)	90%

2. 제1호의 물질 중 최고거래량 또는 최고농도가 설정되지 않은 물질은 각각 다른 면제사유가 없으면 거래를 할 때마다 그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u>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①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장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기획재정부장관</u></li> <li><u>2. 교육부장관</u></li> <li><u>3. 외교부장관</u></li> <li><u>4. 법무부장관</u></li> <li><u>5. 국방부장관</u></li> <li><u>6. 행정안전부장관</u></li> <li><u>7. 보건복지부장관</u></li> <li><u>8. 여성가족부장관</u></li> <li><u>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u></li> <li><u>10. 국무조정실장</u></li> <li><u>11. 관세청장</u></li> <li><u>12. 검찰총장</u></li> <li><u>13. 병무청장</u></li> <li><u>14. 경찰청장</u></li> <li><u>15. 해양경찰청장</u></li> </ol> <p><u>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조의5제1항에 따라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u></p>

<p>대통령령 제3417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의7 (생 략)</p>	<p><u>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u></p>
<p>&lt;신 설&gt;</p>	<p>대통령령 제3417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의8 (현행 제2조의7과 같음)</p>
<p>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lt;신 설&gt;</p>	<p><u>제14조의2(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점업의 범위) 법 제44조의2 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통주점영업을 말한다.</u></p>
<p>① · ② (생 략)</p>	<p>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①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 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고농도는 별표 8과 같다. ② ·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p>

〈 의안 소관 부서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연 락 처	(043) 719 - 2805